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523-9752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230913-02
시행일자 2023. 09. 13.
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제 목 [보도자료]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사유가 불분명한 국가필수약 목록 재정비 이대론 안된다.

[보도자료]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사유가 불분명한 국가필수약 목록 재정비 이대론 안된다.

- 이번 국가필수약 목록을 재정비로 기존 안정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다.
- 유산유도제는 왜 부합하지 않은지, 다수의 HIV 치료제를 왜 지정해제 검토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국가필수약의약품목록 재정비의 목적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11월내 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목록 재정비 사업에 제시되었어야 할 국가필수약품 지정에 대한 기준 및 지정해제 검토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있다면 시민사회가 수차례 요구했던 유산유도제는 왜 부합하지 않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필수약품 안정공급기반 구축사업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한국 희귀·필수약품 센터의 확대 및 각종 규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196건의 공급중단 및 공급부족이 발생한 만큼 현재 관련 사업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도 불분명한 목록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재정비 사업으로 국가필수약품 지정 요청서에는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제시하

지 않고 있다. 단지 질병의 위중도, 국내외 진료지침에 따른 근거, 공급 불안정성에 관하여 빈칸을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질병의 위중도, 진료지침 근거, 공급불안정성이 지정에 관한 유일한 기준이라면 최근 품질약 관련 이슈를 겪고 있는 감기약, 변비약, 심지어 관절염 보조제까지 수많은 의약품들이 이에 부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다. 뿐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나 뱀독 등에 관한 해독제 및 감염질환 치료제, 소외질환 치료제는 필수적이면서 시장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에 배제될 수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요청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지정 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정해제 가능 목록에 포함된 90개 의약품에 대한 지정해제 기준도 마찬가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2016년 109개를 시작으로 지난 7년 동안 9차례에 걸쳐 511개까지 확대되어 왔다. 매해 확대된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들은 지정에 대한 근거와 당시의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식약처는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의약품들이 과거에 왜 지정기준에 부합했으며, 현재 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표 1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지정 확대 현황

지정 일자	2016.12	2017.12	2018.6	2019.7	2019.12	2020.6	2020.12	2021.2	2021.7	2021.12
확대 목록	-	85	104	36	52	38	62	1	2	5
총 목록수	109	211	315	351	403	441	503	504	506	511

특정 치료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많은 여성들이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가장 선호되며,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 임신중지는 여전히 한국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약물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치료제인 미페프리스트톤(일명 미프진)은 식약처가 주로 허가사항을 참조하는 A8 국가에 모두 허가가 이뤄진 의약품이며,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가들에 미페프리스트톤 등 유산유도제의 안정공급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는 수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며 거절하였다¹⁾.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지정기준을 밝히고 유산유도제가 요건에 부합하다면 지체없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

1) 유산유도제의 공급 및 필수약품 지정 요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임신중지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시민(여성), 의사, 약사였다.

또한 지정해제 가능 목록에는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치료제 14품목 중 9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질환 특성상 치료를 위해 다양한 품목의 의약품이 필요하다. 과거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적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안정공급에 대한 우려도 높은 의약품이다. 그럼에도 14품목 중 9품목의 치료제에 지정해제를 검토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

< 표 2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 가능 목록 중 HIV 관련 약물 목록

연번	의약품명	사용목적
1	네비라핀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	랄테그라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3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
4	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5	아바카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6	아바카비르·라미부딘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7	아타자나비어 캡슐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8	에파비렌즈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9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최근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다이어트가 식약처의 최우선과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공급안정이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공급부족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급성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약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필수의약품목록 재정비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23년 9월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첨부 1: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
- 첨부 2: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요청서 및 지정해제 의견서에 대한 서식
- 첨부 3: 국가필수의약품 해제 가능의약품 목록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

1. 의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목적과 기준이 불분명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 사업을 반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정비사업에 제시되어야 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에 대한 기준 및 지정해제가능 목록으로 포함된 90개 의약품의 구체적인 해제 사유를 밝힐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기준에 왜 부합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

2. 배경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기반 구축사업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하여 통합적 관리 및 안정공급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가필수의약품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및 공급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식약처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 및 수입자에게 공급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우기도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허가할 때 공급자가 안전성·유효성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자료 일부를 면제시켜주거나 수입 시 거쳐야 하는 시험검사 등을 갈음 받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이 공급중단 및 공급부족한 사례는 196건이며(평균 매년 49건), 전년도 공급중단·공급부족이 있었던 품목이 다음해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건수도 34건에 달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공급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에 단 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다.

< 표 1 >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중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8,000 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가.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운영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200,000원×10회=2,000천원 · 인쇄비 300,000원×10회=3,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32,000천원 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9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 92,000,000원×1회=9,000천원 나. 국가필수의약품 현행화 체계 운영 관련 조사 (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 40,000,000원×1회=4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천원 가.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운영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원×5명×5회=10,000천원 	138,000 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가.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운영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200,000원×10회=2,000천원 · 인쇄비 300,000원×10회=3,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32,000천원 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9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 92,000,000원×1회=9,000천원 나. 국가필수의약품 현행화 체계 운영 관련 조사 (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 40,000,000원×1회=4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천원 가.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운영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원×5명×5회=10,000천원

이처럼 부실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문제는 국회에 단골 지적사항이었다. 2022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현황 파악 및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 방기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았다. 그리고 올해 식약처가 제시하는 사업이 바로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 사업이지만 이는 기존의 비판과 전혀 동떨어진 사업에 불과하다.

3. 상세 내용

첫째,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정신청을 받기 전에 필수약품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재정비 사업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요청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신청사유로 질병의 위중도, 국내외 진료지침에 따른 근거, 국내 공급 불안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신청사유는 현재 해외 원료의약품에 의존하면서 공급이 불안정한 대다수 의약품들이 이러한 기준에 따른 지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열진통제 및 진해거담제(감기약), 사하제(변비약), 심지어 관절염 보조제까지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게다가 진료지침에 근거한 지정은 오히려 소수환자 대상 질환이나 소외질환에 대한 치료제 지정을 배제할 우려도 있다. 가령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뱀독 중독 등 해독에 관한 치료제, 탄저병 등 감염질환이나 한센병과 같은 소외질환 치료제는 임상에서는 필수적인 치료제일 지라도 신청사유 빈칸을 채울 진료지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약처는 필수약품 지정신청을 받기에 앞서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이 필수약품 지정 기준에 왜 부합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약품 목록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주요 참조국인 A8국가(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에 모두 허가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필수약품 지정요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수차례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 수천 명의 약사, 의사, 시민들의 지정요구에도 유관부서 및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시하는 신청사유에는 유관부서 및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단순히 질병의 위중도, 진료지침에 따른 사용근거, 공급 불안정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품에 관한 지정기준을 밝히고 미페프리스톤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체없이 국가필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

셋째, 지정해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정해제 가능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들이 국가필수약품으로 지정된 배경 및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가필수약품 목록은 2016년 109개를 시작으로 지난 7년동안 9차례에 걸쳐 511개로 확대되어 왔다. 매해 확대된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들은 지정에 대한 근거 및 당시 확대하게 된 배경들이 있을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해제를 검토하기 이전에 당시 해당 의약품이 국가필수약품 지정기준에 왜 부합했으며, 현재 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

< 표 2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지정 확대 현황

지정 일자	2016.12	2017.12	2018.6	2019.7	2019.12	2020.6	2020.12	2021.2	2021.7	2021.12
확대 목록	-	85	104	36	52	38	62	1	2	5
총 목록수	109	211	315	351	403	441	503	504	506	511

넷째, 특정질환 치료제들이 지정해제 가능 목록에 대거 포함된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한다.

지정해제 가능 목록에는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치료제 14품목 중 9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질환의 특성상 여러 질환에 같이 감염되었을 때 대응할 치료제,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필요한 치료제, 기존치료제의 내성 등의 발생으로 교체할 치료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다국적제약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안정공급에 대한 우려도 높은 의약품이다. 그럼에도 14품목 중 9품목의 치료제에 대해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

< 표 3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 가능 목록 중 HIV 관련 약물 목록

연번	의약품명	사용목적
1	네비라핀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	랄테그라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3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
4	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5	아바카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6	아바카비르·라미부딘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7	아타자나비어 캡슐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8	에파비렌즈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9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첨부2>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요청서 및 지정해제 의견서에 대한 서식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요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 의약품 개요	
신청 기관명	담당자 / 연락처
신청 의약품명 (성분+제형명)	예) 카나마이신 주사제 *특정상품명 기재불가
의약품 사용목적	(지정 검토를 위한 효능효과·적응증 기재) 예) 다제내성 결핵
신청 사유	
질병의 위중도 (유병률 및 국내발생, 발병시 치명률등)	(500자 내외) * 참고문헌/근거 기재 요망
국내외 가이드라인 또는 진료지침에 따른 치료·사용 근거 (1차 치료제, 소아 사용 의약품 등)	(500자 내외) * 참고문헌/근거 기재 요망
국내 공급 불안정성 (공급현황, 공급중단 이력 대체의약품 현황 등)	(500자 내외) * 대체 의약품등 관련 참고문헌/근거 기재 요망
종합 의견 (신청 경위 및 사유)	(500자 내외)
참고문헌(※신청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작성 및 첨부 필수)	
1.	
2.	
3.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 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대상 의약품 개요

제출기관명		담당자 / 연락처	
대상 의약품명 (성분+제형명)	<i>예) 카나마이신 주사제</i>		

검토의견

의견 (지정 유지 또는 지정 해제 가능)	<i>예) 지정 유지 필요 예) 지정 해제 가능</i>
세부 사유	<i>예) ○○○ 질병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으로, ○○치리지침 상 1차 약제로 규정되는 등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음 예) 대체의약품 등에 따라 ○○○ 질병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지 않음 * 참고문헌/근거 기재 요망</i>

참고문헌

- 1.
- 2.
- 3.

<첨부3> 국가필수의약품 해제가능 의약품 목록

연번	의약품명	사용목적
1	라듬(223Ra)염화물 주사제	전립선암
2	아메지닐 정제	저혈압
3	아세틸시스테인 주사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4	에리스로마이신 캡슐제	감염증
5	지질 수액제	친유성 약물중독
6	페그필그라스티م 주사제	방사선으로 인한 호중구 감소
7	플루마제닐 주사제	벤조디아제핀 중독
8	피리독신 주사제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중독
9	네비라핀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10	랄테그라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11	레보플록사신 정제	폐렴, 급성부비동염, 결핵
12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
13	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14	리팜피산·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 정제	폐결핵
15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제	폐렴, 패혈증
16	모르핀 주사제	암 환자 등의 통증 완화
17	목시플록사신 정제	폐렴, 급성부비동염, 결핵
18	미데카마이신 건조시럽제	폐렴
19	비소프롤롤 정제	고혈압, 협심증
20	아바카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1	아바카비르·라미부딘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2	아산화질소 흡입제	전신 마취 진통 및 진정
23	아타자나비어 캡슐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4	에날라프릴 정제	고혈압, 심부전
25	에파비렌즈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26	요오드화나트륨(131I) 캡슐제	갑상선암
27	이미페넴·실라스타틴 주사제	폐렴, 기관지염, 다제내성 결핵
28	이소플루란 흡입제	전신마취
29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30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
31	할로탄 흡입제	흡입마취제
32	니솔디핀 정제	본태고혈압
33	니트로푸란토인 시럽제	방광염
34	데노파민 정제	만성심부전증
35	독시사이클린 시럽제	방선균증, 탄저병, 콜레라 등
36	레티놀팔미테이트 캡슐제	망막세포변성증
37	리포솜시타라빈 주사제	림프종성 뇌수막염
38	메트로니다졸 시럽제	패혈증, 괴저성 폐렴 등
39	메트로니다졸 좌제	패혈증, 괴저성 폐렴 등
40	비페리덴 정제	특발성 파킨슨증
41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시럽제	장티푸스, 급만성방광염 등
42	세인트존스워트 정제	불안, 우울증
43	시조피란 주사제	자궁경부암
44	시프로플록사신 시럽제	호흡기감염증, 위장관감염증, 패혈증 등
45	아목시실린 주사제	기관지염, 중이염, 신우신염, 장티푸스 등
46	아스피린 제피세립 정제	류마티양 관절염

연번	의약품명	사용목적
47	알벤다졸 정제	기생충감염
48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제2형 성인 당뇨병
49	오빌톡삭시맙 주사제	탄저균 감염의 예방 및 증상경감
50	퀴닌 정제	기생충감염
51	클로람페니콜 주사제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52	클로람페니콜 캡슐제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53	클린다마이신 캡슐제	농흉, 폐렴 등
54	포스포마이신 주사제	패혈증, 복막염, 방광염 등
55	플록스우리딘 주사제	위장관 선암
56	미노사이클린 캡슐제	한센병
57	탄저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탄저병 치료
58	밀테포신 캡슐제	리슈만편모충증
59	석사메토늄 주사제	신경근 차단제
60	세프타롤린 주사제	MRSA 감염증
61	수라민 주사제	아프리카수면병
62	스티보글루코네이트 주사제	리슈만편모충증
63	아트로핀·프랄리독심 주사제	유기인계 신경작용제 중독
64	에플로니틴 주사제	아프리카수면병
65	텔라반신 주사제	MRSA 감염증
66	농글리세린·과당 주사제	두개내압 강하
67	디펜히드라민 주사제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완화
68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시럽제	코로나19 감염증
69	메퀴타진 시럽제(소아용)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완화
70	멸균생리식염수(관류용)	관류 및 세정
71	설파디아진은 크림	화상, 각종 피부궤양으로 인한 병원균 감염증
72	세파졸린(1g) 주사제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73	오플록사신 이용액	이비인후과적 국소 감염증
74	인터페론베타1-b 주사제	코로나19 감염증
75	페치딘 주사제	치료 전 처치
76	프로프라놀롤 정제	심혈관 질환
77	히드록시에틸전분-염화나트륨 주사제	혈액량 감소
78	디설피람 정제	알코올 의존증
79	디펜히드라민 정제	약물 유발성 근긴장이상증
80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 겔제	성선기능저하증
81	바다뱀 항독소 주사제	바다뱀 독 중독
82	벤즈트로핀 주사제	약물 유발성 근긴장이상증
83	산호뱀 항독소 주사제	산호뱀 독 중독
84	세벨라머 산제	인 결합체를 형성하여 인배출
85	세벨라머 정제	인 결합체를 형성하여 인배출
86	스트렙토코커스파이오게네스 주사제	혈관종, 림프관종
87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제	객담 배출
88	트레오설판 주사제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89	프로카인아미드 주사제	부르가다 증후군 진단
90	히드록시진 시럽제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완화제(소아용)